

[별표] <개정 2012.1.10>

시험·분석 및 검정 업무 처리 절차(제5조제1항 관련)

1. 시험의 경우

- 가. 의뢰서 접수(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기에 접수한다)
- 나. 의뢰된 시험 내용의 검토(농촌진흥청장이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다)
- 다. 시험계획서 작성
- 라. 시험계획서의 심의(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은 공동으로 참여한다)
- 마. 시험 실시의 통지(시험계획서를 심의한 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시험 실시 여부와 시험 개시일 및 시험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)
- 바. 시험 실시(시험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)
- 사. 시험 결과의 평가
- 아. 시험 성적증명서의 작성
- 자. 시험 결과의 통지(시험 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통지한다)

2. 분석 및 검정의 경우

- 가. 의뢰서의 접수(수시로 접수한다)
- 나. 분석 또는 검정의 실시(분석 또는 검정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)
- 다. 성적증명서의 작성
- 라. 결과의 통지(분석 또는 검정 완료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)